

보건소규정

제 정	:	2003. 3. 1
개 정	:	2005. 7. 20
개 정	:	2008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이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금강대학교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보건소에는 소장과 간호사를 둔다.

②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④필요시 촉탁의사 및 약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촉탁의사) ①진료상 필요할 때에는 촉탁의사를 둘 수 있으며, 약품조제 및 약품투여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촉탁약사를 둘 수 있다.

②촉탁의사와 촉탁약사는 교외 의사 및 약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직무) 보건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건강관리 및 상담
2. 응급처치 및 기본적 외상치료
3. 촉탁의사 및 약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행위 및 예방접종
4. 교내 위생관리 및 학생 행사시 의료지원
5. 각종 의약품 구입 및 관리
6.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상담
7.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(보건소 이용) ①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및 교직원은 지정된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하되 이용 전 보건카드에 인적사항을 기입한다.

②보건소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평 일 : 09:00 ~ 12:00, 13:00 ~ 18:00
2. 공휴일과 토·일요일은 휴무함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보건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보건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건소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기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운영위원회는 소장, 경영지원팀장, 기획조정팀장, 학생복지팀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제7조(회계) ①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비와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②보건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.

③진료수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